

##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

(제3-37조제2항 관련)

구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비고	
자산	현금, 현금성 자산, 예치금 및 담보금	장부가액	외화, 외화예금, 외화예치금 포함	
	주식	시장성 있는 것	시가평가	당기손익인식증권, 매도가능증권, 관계회사투자지분 등 포함
		시장성 없는 것	순재산가액	
	채권 (債券)	원화채권 (CP포함)	시가평가	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채권시가평가전문기관이 공표하는 것  ○ 다만, 수익률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
		외화채권	시가평가	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 단, 시가가 없으면 장부가액
	수익증권	국내집합투자증권	기준가격×좌수	발행 집합투자업자가 공표하는 것
		외국집합투자증권	순재산가액(NAV)	발행 집합투자업자가 공표하는 것  ○ 다만, 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기준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순재산가액으로 평가
	매수옵션		시가평가	
	채권 (債權)	채권총액-손실예상액		대손충당금차감전 가액기준
	기타자산	실질가치가 있는 것	장부가액	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, 전세권, 임차보증금, 전신전화가입권, 신원보증금 선급금 중 기타 선급금, 선급법인세, 미경과선급비용 등
실질가치가 없는 것		장부가액 전액차감	재무상태표상 기타자산중 상기 이외의 기타자산  ○ 당해 회사가 특히 자산가치가 있다고 입증한 것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적정한 가액 인정	

구분	평가항목		평가기준	비고
자산	유형자산 (투자부 동산포함 )	토지	시 가	건설중인자산 포함
		건물 등		
	기타 감가상각 대상자산	장부가액	감가상각누계액 차감후 가액	
	무형자산		장부가액 전액차감	
부채	(일반원칙)		장부가액	퇴직급여부채는 전직원 일시퇴직시 필요한 금액(국민연금전환금 포함)
	매도증권		시가평가액	
각주사항	평가에서 제외			

### <주의사항>

- 채권(債權)은 재무상태표상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말함.
- 채권(債權)의 손실예상액은 "고정" 분류채권의 20%, "회수의문" 분류채권의 75%, "추정 손실" 분류채권의 100%(이하 "최소적립비율"이라 한다)를 적용. 다만,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현재 채권(債權)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손실예상액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적용할 수 있음

#### <최소적립비율 초과가 확실시되는 경우 예시>

- 한국자산관리공사,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, 그 밖에 자산관리회사 등에 매각할 채권으로서 동일 성격 채권의 매각 사례 등에 비추어 매각할 때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
  - 담보처분에 따라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서 최근 법원의 평균낙찰률 등을 감안할 때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
  - 그 밖에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
- 유형자산 중 토지·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(또는 과세시가표준액) 공시지가도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.
  -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는 모두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, 평가기간동안의 환율 변동분을 고려함.
  - 우발자산·채무로 주식 기재된 사항이 부실로 확정되거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확정금액 및 합리적 추정금액을 자산·부채 평가 및 산정에 포함한다.